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99호 2018.9.10(월)

고 시

- 제2018-15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 제2018-159호 : 도시관리계획(마산근린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 제2018-160호 :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고시 7
- 제2018-16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8

공 고

- 제2018-1328호 : 논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0
- 제2018-1331호 :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13
- 제2018-1335호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예금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6
- 제2018-1347호 : 논산시 도시계획시설(연무 중로1-1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9
- 제2018-1354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0
- 제2018-1355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1
- 제2018-1356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2
- 제2018-1357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3
- 제2018-1358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4
- 제2018-1359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5
- 제2018-1360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26
- 제2018-1371호 : 운행정지자동차 공시송달공고 27

회 람							
--------	--	--	--	--	--	--	--

공 고
(입법예고)

- 제2018-1343호 :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8
- 제2018-1344호 :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논산시고시제2018-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논 산 시



○ 도로명주소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 변영로29번길 14-15(취암동)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8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041-746-5645, 5646)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8.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075-4	충청남도 논산시 변영로29번길 14-15 (취암동)	20090909	변영로의 시작점에서 약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563-19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85번길 1 (취암동)	20090909	시민로의 시작점에서 약3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640-50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수탕원로383번길 8	20090909	수탕원로의 시작점에서 약3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8-12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논산평야로744번길 29	20090909	논산평야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309-3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5길 4-13	20090909	월오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335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2길 38-1	20081201	백석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314-12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바랑산2길 25-1	20090909	바랑산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8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509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현로53번길 44-2	20090629	매죽현로의 시작점에서 약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휘암동 563-4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83-2	20180830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논산시고시제2018-159호

도시관리계획(마산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마산근린공원)을 기존 자연현황을 보존한 계획을 통해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이 부족한 곳에 여가생활공간 및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마산근린공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논 산 시 장



다 음

가.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마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연무읍 마산리 산6-19번지	9,120.0	9,120.0	-	충고- 제1987-17 5호 1987.11.27	

나.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마산 근린공원	○ 녹지면적 감 102.6㎡ ○ 시설면적 증 102.6㎡ · 도로시설 감 119.5㎡, · 휴양시설 증 232.8㎡,	○ 현황을 적용한 동선정비 ○ 부적합한 조경시설 조정

다. 공원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공원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²)			건 축 면 적 (m²)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9,120.0	9,120.0	-	-	-	-	-	-	-	
시 설 지 구	1,607.4	1,710.0	증 102.6	-	-	-	-	-	-	
녹 지	7,512.6	7,410.0	감 102.6	-	-	-	-	-	-	

(2) 공원결정(변경) 시설조서

구 분		면적(m²)				구성비 (%)	건축면적(m²)								비고
		당초	변경	증	감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	감	기정	변경	증	감	
합 계		9,120.0	9,120.0				-	-	-	-	-	-	-	-	
	시설소계	1,607.4	1,710.0	102.6		18.7	-	-	-	-	-	-	-	-	
교통 시설	교 계	1,062.8	943.3		119.5		-	-	-	-	-	-	-	-	
	도로	777.6	743.7		33.9		-	-	-	-	-	-	-	-	
	광장	285.2	199.6		85.6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휴양시설		420.5	653.3	232.8			-	-	-	-	-	-	-	-	
유희시설							-	-	-	-	-	-	-	-	
운동시설		124.1	113.4		10.7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녹 지		7,512.6	7,410.0		102.6	81.3									

(3) 공원결정(변경)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비고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9,120.0	9,120.0	-	-	-	-	
교통 시설	소 계	1,062.8	943.3	감) 119.5	-	-	-	
	도 로	777.6	743.7	감) 33.9	-	-	-	
	광 장	285.2	199.6	감) 85.6	-	-	-	
휴양 시설	소 계	420.5	653.3	증) 232.8	-	-	-	
	휴게쉼터1	152.0	32.0	감) 120.0	-	-	-	
	휴게쉼터2	268.5	109.5	감) 159.0	-	-	-	
	숲체험장	-	511.8	증) 511.8	-	-	-	신설
	파고라	①	4개소	-	-	-	-	
	평의자	②	10개소	-	-	-	-	
운동 시설	소 계	124.1	113.4	-	-	-	-	
	체력단련장	124.1	113.4					
	체력단련시설	③	5개소	-	-	-	-	
녹지	소 계	7,512.6	7,410.0	증) 102.6	-	-	-	

(4) 도로 총괄조서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 고
계	기 정	-	-	379.3	777.6	
	변 경	-	-	375.8	743.7	
산책로	기 정	-	2	134.0	268.4	
	변 경	1	3	14.2	42.7	
산책로	기 정	-	2	27.9	62.2	
	변 경	2	2	59.9	119.7	
산책로	기 정	-	2	82.3	164.8	
	변 경	3	2	118.3	236.7	
산책로	기 정	-	2	31.7	63.8	
	변 경	4	2	32.5	65.0	
산책로	기 정	-	2	51.7	104.3	
	변 경	5	2	34.6	69.3	
산책로	기 정	-	2	17.0	34.3	
	변 경	6	2	71.6	143.2	
산책로	기 정	-	2	34.7	79.8	
	변 경	7	1.5	30.0	45.0	
산책로	신 설	8	1.5	14.7	22.1	

라.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논산시고시제2018-160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하 천 명	논산천(지방하천)	
점용위치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294-11번지 외 1필지	
점용목적	상수도관 설치	
점용면적	일시 24㎡, 영구 4㎡	
점용기간	2018. 9. 7. ~ 영구	
점 용 자	대 표 자 (성 명)	논산시장(맑은물과)
	주 소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 9. 7.

논 산 시



논산시고시제2018-161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논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3길 52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4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041-746-5645, 5646)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9.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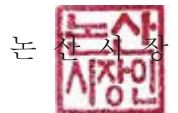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1-9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8길 11-9	20081201	계백로의 시점에서 송정리를 지나는 여덟번째 분기 도로
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 95-3, 95-1, 95-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만어3길 79-1	20090909	만어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514-4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1길 72-59	20081201	방축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404-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3길 52	20081201	방축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논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논산시 취암동 103-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녹지(소로2-98호, 소로3-87호, 완충녹지8호)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논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녹지(소로2-98호, 소로3-87호, 완충녹지8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논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녹지(소로2-98호, 소로3-87호, 완충녹지8호)
- 명 칭 :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취암동 103-67번지 일원

다.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3,136㎡
- 연장 및 폭원 : · 소로3-87호 : L=213m(B=6.0~7.1m)
· 소로2-98호 : L=44m(B= 7.13m)
· 완충녹지8호 : L=11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9.12.31.

바. 공람기간 : 2018. 9. 10. ~ 2018. 9. 28.(14일 이상)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 도시재생과 (☎041-746-621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관계도서 : 별첨1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284-1	도	1,859	84	국	국(국토교통부)	
2	284-18	전	253	253	공	공(논산시)	
3	산33-1	도	2,483	25	국	국(국토교통부)	
4	289-3	도	596	60	국	국(국토교통부)	
5	289-31	잡	54	54	공	공(논산시)	
6	산30-3	임	472	182	공	공(은진면)	
7	289-11	잡	525	189	공	공(논산시)	
8	289-46	도	72	4	공	공(논산시)	
9	289-48	잡	50	34	공	공(논산시)	
10	289-49	잡	107	107	공	공(논산시)	
11	289-50	잡	153	153	공	공(논산시)	
12	289-51	잡	46	46	공	공(논산시)	
13	289-14	장	622	23	공	공(논산시)	
14	103-67	임	355	355	공	공(논산시)	
15	103-57	도	64	64	공	공(논산시)	
16	산21-15	도	10,500	478	국	국(건설부)	
17	103-66	대	145	135	공	공(논산시)	
18	103-58	임	19	19	공	공(논산시)	
19	103-50	임	235	235	공	공(논산시)	
20	산21-59	임	263	94	공	공(논산시)	
21	103-62	임	348	13	공	공(논산시)	
22	103-63	임	421	421	공	공(논산시)	
23	103-42	도	175	108	공	공(논산시)	
소 계			19,817	3,13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지장물조서]

구 분			단위	계	논산시 내동	논산시 취암동	비고
기타	지장물	울타리	m	42	42	—	
	전주	한전주	본	2	1	1	
		체신주	본	1	—	1	
	지하 매설물	수도계량기	개	1	—	1	

논산시공고제2018-1331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8.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271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8년 9월 3일 ~ 9월 28일
- 장 소 :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9월 3일 ~ 9월 28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
※문의 ☎ 041-746-5614~5616
- 제출방법 : 시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8. 9. 3.

논 산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	
	지 목 :	
	실제이용상황 :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 / m²	의견가격 원 / m²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의견제출인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210mm×297mm(백상지 80g/㎡)

- 14 -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 1. 1.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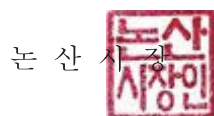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납부 독촉 및 예금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03일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예금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03. ~ 2018. 9. 18.(15일)
3. 대 상 자

납부자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 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박서*	810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로*****	폐기물 불법투기	208,4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및 예금압류 예고 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논산시청 환경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가산금(60개월)이 추가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논산시청 환경과 (☎ 041-746-5533)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상호)	
	주 소	
3. 의견		
4. 기타 : 우편 발송할 경우 미리 환경과(담당자 ☎ 746-5534)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주민등록번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市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市 환경과 자원순환팀 (담당자 ☎746-5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시설(연무 중로1-1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 논산시 고시 제2018-64호(2018. 4.16.)로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연무 중로1-1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재생과(041-746-62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9. 10.

논 산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25-9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연무 중로1-12호)
- 2) 명 칭 : 연무 골든팰리스 2차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12호) 개설공사

다. 사업면적

- 부지면적 : 1,255㎡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법인명) : 미래도시개발(주) 대표 강경식
- 2)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4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18.6.10 ~ 2018.8.15.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도시재생과(041-746-6214)에 문의

논산시공고제2018-1354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논산소피아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1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1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윤 미 용	장 영 상
사업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군포시
하개(인가)일	2018. 01. 18.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55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장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솔레이유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2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1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박 경 희	장 영 상
사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군포시
허가(인가)일	2018. 01. 03.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56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경희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3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1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윤 경 희	장 영 상
사업자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하개(인가)일	2018. 01. 03.	2018. 09. 05.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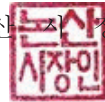
논산시공고제2018-1357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장인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논산호주니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4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1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심 규 원	장 영 상
사업자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군포시
허가(인가)일	2018. 01. 18.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58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송현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7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3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박 병 옥	장 영 상
사업자주소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군포시
하개(인가)일	2018. 01. 22.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59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장구23호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8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3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이 형 균	장 영 상
사업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군포시
하개(인가)일	2018. 01. 18.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60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9. 05.

논 산 시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명3호기 태양광발전소	논산솔라9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110-33 (1필지)	
발전용량	99.36kW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류 근 배	장 영 상
사업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군포시
하개(인가)일	2018. 02. 14.	2018. 09. 05.

끝.

논산시공고제2018-1371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10. ~ 2018. 9. 24. (15일간)
3. 공고대상 : 19두2087, 충남37라7037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2)로 문의 바랍니다.

2018. 9. 10.

논 산 시



논산시공고제2018-1343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4일

논 산 시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기준 강화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활동 제약 및 조례가 운영되지 않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아울러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기업활동 제약 규제완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가스사업 종목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부 허가기준(시설기준) 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사업의 종류 내용 개정)

⇒ 충전사업 6개 종목 중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LPG차량 충전소)을 제외한 기타 충전사업(가정용 LPG용기 충전사업 등)은

현행 강화된 가스조례 적용을 제외하고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규제 완화

(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09월 27일까지 논산시청 【참조 : 사회적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041-746-6022, FAX 041-746-6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붙임 :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회적경제과장	이 종 유
	에너지자원팀장	이 현 순
	담 당 자	박 홍 식 (746-6022)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사업의 종류	허가기준	
<u>액화석유가스</u> <u>충전사업</u> <u>(자동차에 고정된</u> <u>용기 충전사업에</u> <u>한함)</u>	허가지역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에서 가목1)다)의 저장설비는 2배, 가목1)라)의 충전설비와 가목1)마)1)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	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	허가지역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의 영업소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은 동일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3) 주차장: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3) 주차장: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	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사업의 종류	허가기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허가지역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에서 가목1)다)의 저장설비는 2배, 가목1)라)의 충전설비와 가목1)마)1)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	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	허가기준	
<u>액화석유</u> <u>가스</u> <u>충전사업</u> <u>(자동차에</u> <u>고정된</u> <u>용기충전</u> <u>사업에</u> <u>한함)</u>	허가지역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에서 가목1)다)의 저장설비는 2배, 가목1)라)의 충전설비와 가목1)마)1)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	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논산시공고제2018-1344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센티브 제공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안 제3조제5항)
- 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삽입(안 제6조제1항)
- 다. 4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8. 9.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청 희망마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172, FAX 041-746-61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붙임 :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4급” 을 “5급”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 을 “한 차례만”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희망마을건설과장	강 문 구
	건설정책팀장	박 광 용
	담당자	신 영 자 (746-617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의 맡은일) ④ 시장은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히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시의 맡은일) ④ ----- ----- ----- ----- -----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반영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 ----- -----다.
제6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협의회) ① ----- -----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논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 ----- 5급 -----
2.~5.(생략)	2.~5.(생략)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⑤(생략)	⑤(생략)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강 문 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개선대상 자치법규

연번	개선대상 자치법규	조문(조항)	관련부서
1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6	도로교통과
2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17	안전총괄과
3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평생교육과
4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4	평생교육과
5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6	자치행정과
6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	사회복지과
7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	희망마을건설 과
8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민원토지과
9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7	도시재생과